

LPG 시설 기술검토 처리지침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지원부 이용권 부장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시공의 부실사공 방지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 사업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LPG충전시설, LPG저장시설, LPG판매시설, LPG특정사용시설, LPG 기술검토처리지침 등 사공과 관련된 LPG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지는 가스 시공업계의 시공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이 내용을 연속 게재하고 있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LPG시설의 기술검토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처리에 일관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기술검토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LPG 충전시설의 기술검토 업무
2. LPG 저장시설의 기술검토 업무
3. LPG 집단공급시설의 기술검토 업무
4. LPG 판매시설의 기술검토 업무
5. LPG 특정사용시설의 기술검토 업무

제3조 [기술검토 대상 등] ① LPG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 기술검토 대상이 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LPG의 충전·저장·집단공급·판매시설의 신규 설치공사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LPG특정사용자가 가스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가.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kg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LPG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나. 저장능력이 250kg(자동절체기가 설치된 용기집합설비는 500kg) 이상 5t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자(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에서 공동저장설비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경우 포함)

다. 저장소에 부속된 LPG특정사용시설의 사용자

② LPG시설을 변경(시설의 완공 전에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을 포함)코자 할 경우 기술검토 대상이 되는 변경공사는 제4조 각호에 규정된 공사와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변경공사를 위한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 [기술검토 대상이 되는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아 가동중인 시설 또는 허가 후 완성검사를 받기 전의 시설을 변경코자 할 경우, 변경기술검토(변경허가) 대상이 되는 변경공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공사
 - 가. 기존시설(완성검사를 받아 가동 중에 있는 시설)의 경우 동일 부지 내에서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가 변경되는 공사(모든 위치변경이 해당)
 - 나. 허가(변경허가) 후 시설의 완공 전에 동일 부지 내에서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가 기술검토 도면과 다르게 변경되는 공사. 다만, 기술검토 도면상의 설비 외면으로부터 반경 10m 이 내의 경미한 위치변경을 제외(변경된 위치에서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함)한다.
2. 저장설비의 교체설치 공사
3.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능력변경 공사
 - 가. 저장설비(용기보관실 제외) 및 가스설비의 제원변경 또는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설비의 능력이 변경(증가)되는 경우
 - 나. 저장설비 중 용기보관실의 경우에는 면적의 변경에 따라 실질적으로 용기의 저장능력(저장수량)이 변경(증·감)되는 경우
- ※ 저장설비(용기보관실 제외) 또는 가스설비의 감소 또는 제원변경으로 인한 능력변경(감소)은 변경기술검토(변경허가) 대상에 미포함
4. 공급능력의 변경공사
 - 제3호 가목의 경우와 동일한 경우로서 시설변경 후에 공급능력이 변경(증가)되는 경우
5. 배관 길이의 20m 이상 변경공사

배관을 20m 이상 설치위치를 변경(지하매몰→노출 포함)하거나, 배관을 추가로 설치하여 종전보다

배관 길이가 20m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동일 가스설비실 내에서 배관을 20m 이상 설치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조 [기술검토의 신청]

- ①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시설설치계획서 등 관련서류 3부를 첨부하여 신청토록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 신청시에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우편으로 신청케 할 수 있다 (기술검토 수수료는 무통장 온라인 입금 후 입금사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유선 통보토록 운영)
- ③ 기술검토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시설설치계획서”의 서식 및 관련서류는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6조 [검토기준]

- ① 기술검토시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규칙 별표14의 검사기준(정기검사기준 포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설별 검사업무처리지침 및 이 기술검토처리지침을 적용하여 시설설치계획의 적합 여부를 서류로 검토한다.
- ② 제1항의 기준 외에 허가관청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고시·지침·조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적용한다.

제7조 [기술검토 결과 처리]

- ① 기술검토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7일(초일 산입) 이내에 별표3의 “기술검토결과표”에 관련서류 2부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첨부서류에는 매장마다 다음과 같이 기술검토를 필하였음을 표시한다.

* 서류 일련번호 기재 및 검토자 날인(석명은 기재치 않음)

② 중간(공정)검사대상이 되는 공정에 대하여는 기술검토결과표의 비고란에 “중간(공정)검사 대상”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제출된 서류 중 첨부대상이 아닌 불필요한 서류는 정리하여 최종 편철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청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치 않도록 계도한다.

④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에 부속된 LPG특정사용시설”의 기술검토 수수료는 저장소의 저장능력에 따른 LPG특정사용시설 기술검토 수수료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 결과는 “적합”, “보완요구” 또는 “부적합”으로 구분하며, 결과 통보시의 표준문안은 별표4와 같다.

제8조 [서류보완 또는 보완시공 요구]

① 기술검토 결과 시설설치 계획이 안전확보 및 관련기준에 미흡하여 서류보완(또는 보완시공)을 요구해야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절차에 의한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관련지침 미적용, 시설기준의 누락·미흡, 시공기준 적용 잘못, 불필요내용 삽입 등의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서류보완(또는 보완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보완 요구시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기간(통상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표4 제2호의 양식에 의하여 서면통보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할 내용이 경미할 경우(문구·내용의 단순수정, 누락사항의 삽입, 불필요사항의 삭제 등)에는 서면요구 대신 신청인(또는 그 대리자가)이 제출된 서류를 자필로 서 직접 수정·보완토록 하거나(이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자가 수정·보완하였음을 표시하는 정정날인을 하여야 함), 기술검토결과표의 비고란에 보완시공토록 요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된 서류는 매 장마다 보완서류임을 표시(예: “보완서류”)하고 검사에 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서류와 일련번호 순으로 혼합 편철한다.(내용이 잘못된 보완 전의 서류는 별도 구분하여 기술검토서류의 끝부분에 편철)

③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발송일 및 도착일 포함)은 민원서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이 1차 보완요구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했을 수 있다.(수수료는 징수)

④ 신청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발송된 때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한다.

⑤ 제출된 기술검토서류 내용이 미비하여 2회 보완요구시에도 보완된 내용이 제6조의 검토기준에 부적합시에는 “기술검토결과표”를 작성하여 별표 제3호의 서식에 의거 부적합처리(통보)하며, 관련서류 2부는 반송한다.(기술검토 수수료는 반환치 않음)

제9조 [기술검토 처리기간의 연장]

① 결재권자는 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기술검토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검토 처리기간(7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최종처리 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술검토 서류의 반송]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 대상이 되지 않은 기술검토서류가 접수되었거나, 기술검토가 완료(최종결재를 기준)되기 전에 신청인인 기술검토 취하(서류 반송)를 요구할 경우에는 접수된 서류를 반송함과 동시에 수수료를 환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술검토 비대상 서류의 반송시에는 반송사유를 명기하여 공문으로 반송하고 신청인이 취하(서류 반송)를 원하는 반송의 경우에는 내부결재 후 반송처리 한다.

제11조 [보칙] 기술검토를 받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령의 개정으로 시설 및 기술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기술검토를 다시 실시 후 허가를 신청토록 운영(허가관청에도 협조요청)한다.

부 칙(2000. 10. 23)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1개월 동

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구된 첨부서류도 제5조 제2항 관련 별표1 및 별표2의 규정에 적합하게 징구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적용의 예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의 LPG자동차 충전소에 관한 기술검토는 이 지침의 규정 및 [엘피 620-3192호(2000. 8. 17)]에 의한 업무지시 사항(현지실사 제외)을 병행, 적용하여 기술검토를 처리한다.

부 칙(2001. 4. 10)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현재 기술검토 신청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LPG충전(저장·집단공급·판매·특정사용시설) 시설 설치계획(계획변경)서

1. 사업소 현황

상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소 재 지			가스시설의 용도		
부 지 면 적	m ²		도시계획상 구분	지 역	
사업소 내 건축물의 종류·면적 및 용도 (LPG충전시설에 한함)	종 류 (면 적)	(m ²)	(m ²)	(m ²)	(m ²)
	용 도				
부 지 현 황	사업자소유의 경우	소유주명	취 득 일 자		
	타인토지 임대의 경우	소유주명	임대차 계약일자 또는 토지사용 승락일자		
공급세대수 (집단공급 시설 또는 공동주택 사용시설에 한함)			개동	세대	

2. 시공계획

시공자(상호)		대표자		시공업 구 분	가스시설시공업 제 종
사무소 소재지				시공업등록번호	

3. 시설 설치내역(설비제원 등)

설 비 명	용 량 (처리능력)	수 량	비 고

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인
 확인자 (충전소 대표자) : 인

(주) : 1) 실제 시공내용이 본 시설설치계획과 다를 경우에도 다를 경우에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검토 변경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않음.
 2) 설치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시설설치내역"의 비교란에 변경전의 내용을 기재할 것.

별표 2

기술검토 신청시의 첨부서류

LPG시설의 신규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시설별 징구해야 할 서류(시설형태별 해당서류에 한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관련서류는 그 내용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설명서”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징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관련서류)”은 1가지 도면(관련서류)에 2가지 이상의 내용표기가 가능할 경우에는 통합표기하여 제출케 할 수 있다.

1. LPG 충전시설

- 가. 시설설치계획(계획변경)서 : 별표1의 소정양식
- 나. 위치도(규격 : A4) : 관련지도(지적도 등)를 복사하여 사업소의 위치를 표시한 것
- 다. 주변상황도(축척 : 1/300~1/600, 규격 : A3) :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와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및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가 표기되고, 주변 보호시설의 종류·명칭 등이 표기된 것.
- 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설명서 : 시설의 구체적인 설치계획을 관계 법령(규칙 별표14)에 맞추어 상세히 작성한 것
- 마.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관련서류
 - 1) 전기부식방지조치 설계서
 - 2) 저장능력 계산서
 - 3) 비상전력 계산서
 - 4) 배관 두께 계산서(sch40 이상 제품 사용시에는 징구 생략)
 - 5) 안전밸브 규격 계산서
 - 6) 살수장치 용량 계산서
 - 7) 지반조사서(지반조사 전문업체가 발행한 것으로서 저장탱크가 설치되는 지점의 직하부에서 2개소 이상의 보링을 하여 조사된 것을 말함. 이하 타 시설에서 같음)
 - 8) 내진설계서
- 바. 시설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 1) 시설배치도 : 저장탱크 및 가스설비·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배치상황(위치) 및 배관경로가 표시된 것(축척 : 1/50~1/600)
 - 2) 저장탱크 도면(축척 : NON SCALE, 치수만 표시)
 - 기초설치 도면(기초의 재료·두께 및 설치방법 등이 표시된 것)
 - 저장탱크시 설치도면 천장·벽 및 바닥의 구조·두께·깃수, 짐수구·점검구·가스검지관의 구조 설치위치가 표시된 것.
 - 저장탱크의 구조도
 - 3) 배관도
 - 배관 평면도(축척 : 1/50~1/100) : 배관의 재질·관경·압력·길이 등이 표시된 것

- 4) PFD(계통도) : 각 가스설비 및 배관·부속설비의 경로와 위치가 표시된 것(축척 : NONE)
- 5) 기타 상세도면(축척 : NON SCALE, 치수만 표시)
 - 냉각살수장치 배관도
 - 가스배관 매설 표준단면도
 - 방폭구역(위험저장소) 구분도
 - 케노피 설치도면(충전기 보호대 설치도 내용 포함)
- 6) 각 도면의 제목에 기입할 내용
 - 공사명, 설계회사 및 설계자명, 도면번호, 설비내역, 척도
- 7) 기타 : 경계표지 내용(규격·문안·설치위치 등)이 표기된 모델

2. LPG 저장시설

- 가. 시설설치계획(계획변경)서 : 별표1의 소정양식
- 나. 위치도(규격 : A4) : 관련지도(지적도등)를 복사하여 사업소의 위치를 표시한 것.
- 다. 주변상황도(축척 : 1/300~1/600 규격 A3) : 저장설비와 주변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및 보호시설의 종류·명칭 등이 표시된 것.
- 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설명서 : 시설의 구체적인 설치계획을 관계 법령(규칙 별표14)에 맞추어 상세히 작성한 것
- 마.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관련서류
 - 1) 전기부식방지조치 설계서
 - 2) 저장능력 계산서
 - 3) 비상전력 계산서
 - 4) 배관두께 계산서(sch40 이상 제품 사용시에는 징구 생략)
 - 5) 안전밸브 규격 계산서
 - 6) 살수장치 용량 계산서
 - 7) 지반조사서
 - 8) 내진설계서
- 바. 시설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 1) 시설배치도 : 저장탱크·가스설비의 배치상황(위치) 및 “가스설비실~사용처”까지의 배관경로가 표시된 것(축척 : 1/50~1/600)
 - 2) 저장탱크 도면(축척 : NON SCALE, 치수만 표시)
 - 기초설치 도면(기초의 재료·두께 및 설치방법 등이 표시된 것)
 - 저장탱크실 설치도면 천장·벽 및 바닥의 구조·두께·칫수, 집수구·점검구·가스검지관의 구조 및 설치위치가 표시된 것.
 -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구조도
 - 3) 배관도

- 배관 평면도(축척 : 1/50~1/100) : 배관의 재질 · 관경 · 압력 · 길이 및 밸브박스 · 계량기등의 위치가 표시된 것
- 4) PFD(계통도) : 각 가스설비 및 배관 · 부속설비의 경로와 위치가 표시된 것(축척 : NONE)
- 5) 기타 상세도면(축척 : NON SCALE, 치수만 표시)
 - 냉각살수장치 배관도
 - 가스배관 매설 표준단면도
 - 방폭구역(위험장소) 구분도
- 6) 각 도면의 제목에 기입할 내용
공사명, 설계회사 및 설계자명, 도면번호, 설비내역, 척도
- 7) 기타 : 경계표지 내용(규격 · 문안 · 설치위치 등)이 표기된 모델

3. LPG 집단공급시설

- 가. 시설설치계획(계획변경)서 : 별표1의 소정양식
- 나. 위치도(규격 : A4) : 관련지도를 복사하여 사업소의 위치를 표시한 것
- 다. 주변 상황도(축척 : 1/300~1/600, 규격 : A3) : 저장설비와 주변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및 보호시설의 종류 · 명칭 등이 표시된 것.
- 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설명서 : 시설의 구체적인 설치계획을 관계 법령(규칙 별표14)에 맞추어 상세히 작성한 것
- 마.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관련서류
 - 1) 전기부식방지조치 설계서
 - 2) 저장능력 계산서
 - 3) 비상전력 계산서
 - 4) 안전밸브 규격 계산서
 - 5) 배관두께 계산서(sch40 이상 제품 사용시에는 징구 생략)
 - 6) 살수장치 용량 계산서
 - 7) 지반조사서[다만, 저장탱크 외면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의 지점에서 당해 주택건설 등을 위한 지반조사(보링 1개소 이상)를 실시한 경우에는 동 지반조사서로 제출 가능]
 - 8) 내진설계서
- 바. 시설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 1) 시설배치도 : 저장탱크 및 가스설비의 배치상황(위치) 및 “가스설비실~사용처”까지의 배관경로가 표시된 것(축척 : 1/50~1/600)
 - 2) 저장탱크 도면(축척 : NON SCALE, 치수만 표시)
 - 기초설치 도면(기초의 재료 · 두께 및 설치방법 등이 표시된 것)
 - 저장탱크실 설치도면 천장 · 벽 및 바닥의 구조 · 두께 · 치수, 집수구 · 점검구 · 가스검지관의 구조 및 설치위치가 표시된 것.

별표 4

기술검토 결과 통보문안(제7조 제5항 관련)

1. 적합의 경우

수신 :

제목 : LPG충전(저장·집단공급·판매·특정사용)시설 기술검토 결과 적합 통보

1. 귀사(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업소)에서 년 월 일 기술검토 신청하신 LPG충전(저장·집단공급·판매·특정사용) 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등 관련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적합하게 작성(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아래의 요령에 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설내용

시 설 명	소 재 지	저장능력(용기보관실 면적)	비 고

나. 후속조치 필요사항

- 1) 허가 신청시에는 첨부된 기술검토결과표 및 관련서류 2부 외에 허가관청의 요구서류(사업계획서, 토지사용 관련서류, 지적도,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를 첨부하여 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 붙임의 기술검토결과표의 비고란에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반드시 보완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보완시 검사부적합 처리됨)
 - 3) 기술검토결과표에 “중간(공정)검사대상”으로 표기된 공정에 대하여는 반드시 중간(공정)검사를 신청하여 중간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4)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시설 및 기술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다시 기술검토를 받은 후 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5) 배관환경 적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상 우리공사의 검토대상이 아니므로 시공자가 가스사용량을 정확히 파악, 적절한 환경을 적용하여 가스의 안정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에 관한 문제는 시공상의 책임사항임)
- ▶ 우리공사에서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서류상으로 기술검토를 실시하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치계획서, 시설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외의 사항은 검토(서류징구)하지 않으므로, 서류검토내용과 현장의 상황이 다르므로써 발생하는 허가 및 검사상의 문제(부적합 처리 등)는 전적으로 기술검토 서류를 제출한 신청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 붙임 : 기술검토결과표 및 관련서류 각 2부. 끝

한국가스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

2. 보완요구의 경우

수신 :

제목 : LPG충전(저장·집단공급·판매·특정사용)시설 기술검토서류 보완요청

1. 귀사(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업소)에서 년 월 일 기술검토 신청하신 LPG충전(저장·집단공급·판매·특정사용) 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등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일부 내용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미흡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서류를 보완(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년 월 일까지 보완(수정)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 성 예 시”

검토항목 (관련규정)	미흡한 사항	보완(수정)해야 할 사항
1. 용기보관실 (액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제1호 나목(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기보관실 면적이 관련기준에 미달 - 관련기준 : 19㎡ 이상 - 제출내용 :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기보관실 면적이 19㎡ 이상이 되도록 시설 및 기술기준설 명서 및 관련도면 수정
2. 용기보관실 방호벽(액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제1호 나목(2) 및 액법 통합고시 제2장 제2절 제1관 제2-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기보관실 도면상에 방호벽 높이가 미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기보관실 도면에 방호벽 높이(2m 이상)를 표시

(주) 보완서류는 FAX 또는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끝”

한국가스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

3. 부적합의 경우

수신 :

제목 : LPG충전(저장·집단공급·판매·특정사용)시설 기술검토 부적합 통보

1. 귀사(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업소)에서 년 월 일 기술검토 신청하신 LPG충전(저장·집단공급·판매·특정사용) 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등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일부 내용이 미흡하여 2회에 걸쳐 보완토록 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관련규정에 부적합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적으로 부적합 처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가. 보완 요청일자 : 1차(. . .), 2차(. . .)

나. 부적합 처리내용

검토항목 (관련규정)	최종 부적합 내용	비 고
1. 용기보관실 (액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제1호 나목(2))	“작 성 예 시” • 용기보관실 면적 미달 - 관련기준 : 19㎡ 이상 - 제출내용 : 18㎡	
2. 가스누출경보기 (액법시행규칙 별표5의 제1호 마목)	• 가스누출경보기 종류 부적합 - 관련기준 : 분리형 - 설치계획 : 일체형	

- 붙임 : 1. 기술검토 결과표 1부
2. 관련서류 2부. “끝”

한국가스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